2023년도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안내

※ 부산문화재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에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화연결 종료, 출입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05 I 2023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안내

06 ◆ 지원방향
06 ◆ 주요 변경내용
07 ◆ 지원체계도
08 ◆ 공모일정

09 II 공통사항

10 ◆ 기본사항
11 ◆ 지원자격
13 ◆ 심의기준

14 III 지원신청 방법 및 사용시스템

16 IV <우수예술지원> 분야별 지원신청 안내

17 ◆ 문학
22 ◆ 시각예술
23 - 미술
26 - 사진
29 - 영상
31 ◆ 공연예술
32 - 음악·오페라
36 - 무용
38 - 연극·뮤지컬
39 - 전통·국악
41 ◆ 예술비평
46 ◆ 참고)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47 V 별도공모 사전안내

48 ◆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48 - <예술가치확산> 공공예술
50 - <예술가치확산> 다원예술
52 - <주제특화예술> 국제예술교류
54 - <주제특화예술> 레지던시활성화
56 - <주제특화예술> 올해의 포커스온(예정)
57 ◆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지원방향
주요 변경내용
지원체계도
공모일정

I

2023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안내

지원방향

◆ 전문예술인·단체의 우수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진흥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 기반 조성
◆ 예술인 중심의 창작단계별 지원 및 선순환적 예술생태계 구축
- 분야별, 창작단계별 지원체계 확립 및 지원 주체의 다양화 등
▸ 부산지역 예술생태계가 창작 → 제작, 레퍼토리화 → 유통소비확산 → 지역 자산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

주요 변경내용

1. 개인 예술가 지원금 지급 방법 변경 (※ 2022년부터 시행)

◆ 지원금액 : 정액 400만 원
◆ 지급방법 : 원천징수 후 지원금 일시 지급
※ 지원금 총액의 4.4%(필요경비 80%를 인정한 기타소득 세액)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정산방법: 창작활동 결과물 제출(지출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

2. 공모·지원사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

◆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심의위원 후보군(Pool) 구성을 위한 공개 모집 정례화
- 연간 2회(상·하반기) 유관기관, 언론사, 지역 대학교 등의 추천 공문 접수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개별 접수

3.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한 및 예술인 권리보장 강화 (※「예술인 권리보장법」2022. 9. 25. 시행)

◆ 불공정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을 때 지원신청 불가
- [부적격자]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및 개인
- [부적격자] 성희롱·성폭력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 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혹은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부적격자] 성희롱·성폭력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
- [부적격 사업] 타인의 명의 또는 작품을 도용하여 지원신청 한 경우
◆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선정 후 예방교육 이수 필수

4.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지원사업 수행 시 요건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

5. 지원신청 부적격자 추가 사전안내 (※ 2024년도부터 시행)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6. 분야별 변경사항

분야		변경내용
문학		◆ 번역문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부산 문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내용에 번역문학 명시 ◆ 당해연도에 도서발간이 가능한 준비된 예술인에게 지원하고자 제출 원고 편수 일부 확대
문학, 예술비평		◆ 개인의 경우, 작품집/평론·비평지 발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내용 명확화
시각예술	미술, 사진	◆ 단체의 포트폴리오 제출 의무화
공연예술	음악·오페라	◆ 단체 지원신청 세부분야 중 오페라 분리
	연극·뮤지컬	◆ 개인 예술가 미지원 ※ 희곡/시나리오 - 문학분야, 평론 - 예술비평분야 지원신청가능

지원체계도

	2022년				2023년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지원			
창작활동지원 → 창작역량 증진 (수월성 강화)	우수예술지원	문학		개인 단체	우수예술지원	문학		개인 단체
		시각예술	미술	개인 단체		시각예술	미술	개인 단체
			사진	개인 단체			사진	개인 단체
			영상	개인 단체			영상	개인 단체
		공연예술	음악	개인 단체		공연예술	음악·오페라	개인 단체
			연극	개인 단체			무용	개인 단체
			무용	개인 단체			연극·뮤지컬	단체
			전통·국악	개인 단체			전통·국악	개인 단체
		예술비평		개인 단체		예술비평		개인 단체
예술가치확산지원 사회적 가치 확산 →다양성 확대	공공예술				공공예술			
	다원예술				다원예술			
주제특화예술지원 지역특성/시민향유 →지역성 심화	재지원사업(레퍼토리지원)				-			
	국제예술교류				국제예술교류			
	레지던시 활성화				레지던시 활성화			
	-				올해의 포커스온(신설예정)			
유통/홍보지원	창작활동 영상제작지원				-			

◆ 지원체계개선 요약
- [통합] 창작역량강화 + 창작활동 영상제작지원 → 창작준비지원
- [통합+폐지] 재지원사업 → 우수예술지원에서 흡수
- 유통/홍보지원 : 부산 퍼포밍 아트마켓 별도 사업 신설(예정)

공모일정

◆ <우수예술지원> 공모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의	결과발표
2022년 11월 14일(월)	2022년 11월 28일(월) ~ 12월 13일(화) 오후 5시 59분 마감	2022년 12월 ~ 2023년 1월	2023년 2월 초

※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월~금(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 해당시간 외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지원사업명			공모일정	장르	구분	지원규모	세부분야	
부산문화예술지원	창작활동지원	창작준비지원	별도공모	창작준비지원	단체	정액 300만원	전 분야	
		우수예술지원	2022년 11월 14일(월) ~ 12월 13일(화)	문학	개인	정액 400만원	운문, 산문	
					단체	최대 2,000만원	문예지 발간, 기타	
				시각예술	개인	정액 400만원	미술	평면, 입체, 기타
							사진	사진, 기타
							영상	영상 제작
					단체	최대 2,500만원	미술	평면, 입체, 기타
							사진	사진, 기타
							영상	기타, 행사
				공연예술	개인	정액 400만원	음악	기악, 성악, 작곡
							무용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기타
							전통·국악	기악, 성악, 연희, 작곡, 기타
					단체	최대 3,500만원	음악	기악, 성악, 작곡
							연극	연극, 뮤지컬, 기타
							무용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기타
						3,000만원~1억원	오페라	갈라 콘서트, 콘서트오페라, 전막 오페라
						500만원 ~3,500만원	전통·국악	기악, 성악, 연희, 작곡, 기타
				예술비평	개인	정액 400만원	평론, 비평 ※ 학술 관련 지원 불가	
					단체	최대 2,000만원	평론, 비평 ※ 학술 관련 지원 불가	
	예술가치 확산지원		2023년 2월 예정	공공예술	단체	사업예산 내 지원	전 분야	
				다원예술	단체	최대 3,000만원	전 분야	
	주제특화 예술지원		2023년 2월 예정	국제예술 교류	단체	사업예산 내 지원	전 분야	
			2023년 3월 예정	레지던시 활성화	단체	500만원 ~4,000만원	전 분야	
			별도공모	올해의 포커스온(예정)	단체	정액 2,000만원 (1차년도)	공연예술 전 분야	
공연장연계예술 단체육성지원			별도공모	공연예술	단체	5,000만원 ~1억원	공연예술 전 분야 ※ 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위 내용은 공모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
지원자격
심의기준

II
공통사항

기본사항

1. 사업목적

◆ 부산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및 창작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2. 사업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3. 사업내용

◆ 지역 전문예술인의 기초예술창작활동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4. 사업방향

◆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

- **[창작활동지원] 기초예술 창작활동 및 발표지원**
  → 창작준비지원, 우수예술지원(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비평)
- **[예술가치확산지원]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확산, 다양성 확대**
  → 공공예술, 다원예술
- **[주제특화지원] 예술기반 지역특성 및 시민향유 등의 공공성 심화**
  → 국제예술교류, 레지던시활성화, 올해의 포커스온(예정)

5.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운영**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
  (※ 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등)
  → 선정 후 추가 제출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부산거주예술인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년보장 전임교수 확인용)
  ▸ 단체 :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년보장 전임교수 확인용)

◆ **불이익 적용사항**

-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기재 및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 선정된 예술인이 사업수행 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과 크게 변경될 경우

◆ <우수예술지원> 심의기간 중 진행되는 지원신청사업은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사후지원 가능

지원자격

1. 지원신청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공통
개인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소재(거주) 부산예술인 ※ 2021. 11. 14. 이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부산에 지속 거주해야 함(주민등록 기준) ◆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창작활동
단체	◆ 부산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창작활동(국제예술교류는 예외)

2.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공모별 지원신청은 1건씩만 가능하며, 복수 선정 시 최종 1건만 사업수행 가능 (일부 사업 제외)**
- 동일 사업내용으로 신청불가하며, 선정된 최종 1건을 제외한 선정사업은 포기 조치함

◆ **사업수행 시 필요한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후, 지원신청 시와 대비하여 사업내용 50% 이상 변경 불가**
- '사업변경 관련 세부규정 및 조치 기준표' 기준 초과 사업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조치사항 결정

3. 신청제한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신청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제6조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나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⑦ 지원신청 부적격자

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②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③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출자·출연기관(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으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운영비, 경상비 등)으로 지원받는 단체
④ 언론사·학교·학원·종교·친교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
⑤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 및 개인
⑥ 보조금(지원금) 위반행위 단체 및 개인(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⑦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및 개인
⑧ 정년이 보장된 현직대학 전임교수 이상인 개인
⑨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개인
⑩ 성희롱·성폭력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또는 단체)으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개인
⑪ 성희롱·성폭력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개인 또는 단체

⑫ ①, ⑤~⑪에 해당되는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
※ 단, ⑧에 해당하는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일정기간 후 교체되는 임기제 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하며 선정 후 정관 또는 회의록 등 관련 서류 필수제출
※ ⑨~⑪에 해당되는 개인이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⑬ 부산문화재단 내 해당 공모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불이익 적용을 받았을 경우
-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최종 제출기한을 초과하였거나 완료되지 않은 단체 및 개인(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수행한 단체 및 개인
- 2022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완료 후 수행평가 점수 60점 미만 또는 행정평가점수 10점 미만인 단체 및 개인
⑭ 2022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수혜받은 실적이 있는 개인
⑮ 2023년도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단체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2024년부터 시행)

㈏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① 당해 연도에 국고·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일한 사업
(단, 타기관의 중복수혜 가능사업에 대하여 부산문화재단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② 현직 교사·교수의 학술지 발표, 연구활동 등으로 이중 지원 받는 사업
③ 타기관·조직의 주최(기획)사업, 참여(부분 출연 등) 사업
④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⑤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⑥ 보조금(지원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
⑦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⑧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⑨ 초·중·고 예비예술인(대학생)이 50% 이상 사업 수행자로 참여하는 사업
⑩ 학위청구 등 기관(조직) 내 연구활동 실적 제출을 위한 사업
⑪ 타인의 명의나 작품을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사업

4. 심의배제사항

※ 심의배제사항에 해당되거나 감점이 적용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대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 신청제한사항(부적격자,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타 사업(분야)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

심의기준

◆ <우수예술지원> 전 분야 심의기준

심의기준	배점	항목
신청 주체의 전문성	10	• 전문 예술단체 및 개인의 예술활동인가? • 신청 주체가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실적 및 경력은 우수한가?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	30	•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은 탁월한가? • 사업의 질적 수준이 뛰어난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30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지역문화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 시민문화 향유증진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10	• 재원조달 방법과 지원신청금액이 타당하고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 예산편성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되었는가?

※ 문학(개인) 및 음악(오페라)의 경우, 별도의 심의기준을 둠(해당 분야 세부안내 사항 참조)
※ <우수예술지원> 외 심의기준은 해당 공모 시 별도 안내 예정

Ⅲ
지원신청 방법 및 사용시스템

지원신청 방법 및 사용시스템

1. 지원신청 방법 및 기간

방법	접수 기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으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서면접수 불가)	2022년 11월 28일(월) ~ 12월 13일(화) 오후 5시 59분 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용 시 필수 조건

◆ 개인 : '개인'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 단체
-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만 지원신청 가능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검증

3.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월~금(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 해당시간 외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접수완료> 안내는 시스템 상 지원접수가 제출되었다는 의미이며, 서류의 내용이나 파일이 검증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전,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부산문화재단' 선택
→ **내정보방 업데이트**
회원정보 작성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
→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
공모사업 확인 후 신청할 '신청분야(장르)' 선택
↓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최종 첨부파일 확인**
분야별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및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첨부
← **지원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최종 제출하기' 선택하여 지원신청 완료

4. 제출서류

◆ 분야별 지원신청 안내 참조
◆ 서식 다운로드 방법
①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공모/신청 > 공모안내 > 2023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예술지원 사업공고 > 첨부파일 확인
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신청사업 정보입력 팝업창 > 오른쪽 상단 주황색 버튼 선택

문학

시각예술
- 미술
- 사진
- 영상

공연예술
- 음악·오페라
- 무용
- 연극·뮤지컬
- 전통·국악

예술비평

Ⅳ
<우수예술지원> 분야별 지원신청 안내

<우수예술지원> 문학 분야

문학 [개인]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지원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문학작품 창작 및 발간활동, 기타 사업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개인 작품집 발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번역문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부산 문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내용에 <번역문학> 명시

◆ 당해연도에 도서발간이 가능한 준비된 예술인에게 지원하고자 <2023년도 발간예정 미발간 원고> 제출 편수 일부 확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운문	동시, 번역문학, 시, 시조, 기타	10편	→	20편
산문	수필	6편		10편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개인의 작품집 발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2.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소재(거주) 부산예술인
※ 2021. 11. 14. 이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부산에 지속 거주해야 함(주민등록 기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운문 : 동시, 번역문학, 시, 시조, 기타

◆ 산문 : 동화, 번역문학, 소설, 수필, 희곡/시나리오, 기타

4. 지원규모

◆ 정액 4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활동실적자료 (A 또는 B 중 택1)

A.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경우 <문학분야>만 실적으로 인정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로 제출하는 경우, [B. 최근 5년간 활동실적자료 총 3건]은 제출 불필요
  ※ 신진예술인의 경우, 활동실적자료로 제출

B.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 실적자료 1건 당 각 겉표지, 목차, 발행일 표시페이지(판권) 제출 필수
  → 제출서식(한글파일)에 맞추어 이미지 삽입(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활동실적 인정자료	
	• 개인 작품집 발간 실적
	• 문예지·전문지·동인지 등에 본인의 작품이 실린 실적
	• 기타 신문·잡지 등에 본인의 작품을 직접 기고한 실적
	※ 지원신청하는 분야와 동일한 세부분야의 실적만 인정

④ 2023년도 발간예정 미발간 원고 (*무기명 작품심의용으로 이름 기재하지 말 것)

구분			미발간 원고	작성기준
운문	동시, 번역문학, 시, 시조, 기타		20편	한글파일(hwp) 글자크기 12pt 휴먼명조체 줄간격 160%
산문	동화, 소설, 희곡/시나리오	단편(단막)	2편	
		장편(장막)	줄거리 및 도입부, 30페이지 이내	
	번역문학		동화, 소설, 희곡/시나리오, 수필, 기타의 기준에 준하여 제출	
	수필		10편	
	기타		1편, 30페이지 이내	

※ 미발간 원고 : 개인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지 않은 원고(문예지, 온라인 등의 발표는 인정)

※ 번역문학의 경우 번역원고에 해당하는 도서 원문 추가 제출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무기명 작품심의

◆ 심의기준

심의기준	배점	항목
작품의 창의성 및 구성력	40	• 작품의 성격과 내용이 참신한가? • 작품의 성격과 내용이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는가?
질적 완성도	40	• 작품이 문학적으로 우수한 수준인가? • 작품의 내용과 짜임새가 밀도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기여도 및 파급효과	20	• 지역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는가?

7. 유의사항

◆ 발간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또는 ISSN) 등록 필수

◆ 선정된 작품은 지역출판문화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지역소재 출판사 및 인쇄소에서 발행 권장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 (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학 [단체]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예술단체의 문학작품 창작 및 발간 활동, 기타 사업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2. 지원신청자격

◆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문예지 발간
◆ 기타

4. 지원규모

◆ 최대 2,0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구분	활동실적자료
문예지 발간	문예지·전문지·동인지 등 발간 실적자료 1건 당 각 겉표지, 목차, 발행일 표시페이지(판권) 제출 필수 → 스캔 후 제출서식(한글파일)에 맞추어 이미지 삽입(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기타	단체가 개최한 사업 등의 실적자료(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등) → 사업명, 개최연도, 지원신청단체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 → 언론보도의 경우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발간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또는 ISSN) 등록 필수
◆ 선정된 작품은 지역출판문화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지역소재 출판사 및 인쇄소에서 발행 권장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우수예술지원> 시각예술 분야

미술 [개인, 단체]

사진 [개인, 단체]

영상 [개인, 단체]

미술 [개인]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전시기획 및 작품 창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술 분야 전시
- 전시 기간(작품 반입·반출 포함) 최소 7일 이상 권장

2.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소재(거주) 부산예술인
※ 2021. 11. 14. 이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부산에 지속 거주해야 함(주민등록 기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평면, 입체, 기타

4. 지원규모

◆ 정액 4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❶ **지원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전시 예정 작품** - 구상 이미지, 에스키스 또는 조사연구 내용 등 10점 내외 제출 ※ 동일 작품 중복 제출 불가 ※ 기존 작품 제외, 과거 활동 작품은 포트폴리오에 작성 제출 바람
❷ **포트폴리오**	**과거 활동 내역 자료(주요 경력 및 작품)** ※ '포트폴리오' 서식 참고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술 [단체]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제출자료

2022년		2023년
❶ 지원신청서	→	❶ 지원신청서
❷ 포트폴리오(선택사항)		**❷ 포트폴리오(필수제출)**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전시기획 및 작품 창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술 분야 전시
- 전시 기간(작품 반입·반출 포함) 최소 7일 이상 권장

2. 지원신청자격

◆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평면, 입체, 기타

4. 지원규모

◆ 최대 2,5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❶ 지원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 단체의 전시 및 사업 홍보물 (포스터, 팸플릿, 도록, 언론보도, 영상자료 등) → 전시·사업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지원단체명 등이 명시된 자료
❷ 포트폴리오	**과거 활동 내역 자료(주요 경력 및 작품)** ※ 제공된 '포트폴리오'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진 [개인]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전시기획 및 작품 창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개최되는 사진 분야 전시
- 전시 기간(작품 반입·반출 포함) 최소 7일 이상 권장

2.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소재(거주) 부산예술인
※ 2021. 11. 14. 이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부산에 지속 거주해야 함(주민등록 기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사진, 기타

4. 지원규모

◆ 정액 4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❶ 지원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전시 예정 작품** - 구상 이미지, 에스키스 또는 조사연구 내용 등 10점 내외 제출 ※ 동일 작품 중복 제출 불가 ※ 기존 작품 제외, 과거 활동 작품은 포트폴리오에 작성 제출 바람
❷ 포트폴리오	**과거 활동 내역 자료(주요 경력 및 작품)** ※ '포트폴리오' 서식 참고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진 [단체]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2022년	→	2023년
❶ 지원신청서		❶ 지원신청서
❷ 포트폴리오(선택사항)		**❷ 포트폴리오(필수제출)**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전시기획 및 작품 창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개최되는 사진 분야 전시
- 전시 기간(작품 반입·반출 포함) 최소 7일 이상 권장

2. 지원신청자격

◆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사진, 기타

4. 지원규모

◆ 최대 2,5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❶ 지원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 단체의 전시 및 사업 홍보물(포스터, 팸플릿, 도록, 언론보도, 영상자료 등) → 전시·사업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지원단체명 등이 명시된 자료
❷ 포트폴리오	**과거 활동 내역 자료(주요 경력 및 작품)** ※ 제공된 '포트폴리오'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상 [개인]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영상제작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2023년도 작품에 대한 시사회(상영회)를 필수로 개최해야 함

2.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소재(거주) 부산예술인

※ 2021. 11. 14. 이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부산에 지속 거주해야 함(주민등록 기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 타기관의 제작 및 작품지원 사업 등 중복 수혜 불가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영상 제작

4. 지원규모

◆ 정액 4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2023년도 제작예정 트리트먼트** - 한글파일(hwp) 5페이지 이내 제출 ④ **최근 3년간(2020~2022년) 제작한 영상작품 실적 1편** - 본인이 제작한 영상작품 실적 1편 제출(5분 이내 편집 엄수, 엔딩크레딧 포함) ➔ 부산문화재단 이메일 제출(bsarts@bscf.or.kr)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상 [단체]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영상 관련 행사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2. 지원신청자격

◆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기타, 행사
※ 영상제작의 경우 '개인' 만 지원가능

4. 지원규모

◆ 최대 2,5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 단체가 개최한 영상 관련 행사 홍보물(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영상자료 등) → 사업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지원단체명 등이 명시된 자료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우수예술지원> 공연예술 분야

음악·오페라 [개인, 단체]
무용 [개인, 단체]
연극·뮤지컬 [단체]
전통·국악 [개인, 단체]

음악 [개인]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공연, 행사 등 작품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진행하는 공연, 행사 등

2.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소재(거주) 부산예술인
※ 2021. 11. 14. 이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부산에 지속 거주해야 함(주민등록 기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기악, 성악, 작곡

4. 지원규모

◆ 정액 4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5건** - 개인이 개최 또는 참여한 공연 및 행사 등의 실적자료(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공연영상 링크 등) → 공연명, 개최연도, 개인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음악 [단체]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단체 지원신청 세부분야 '오페라' 분리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공연, 행사 등 작품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진행하는 공연, 행사 등

2. 지원신청자격

◆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기악, 성악, 작곡

4. 지원규모

◆ 최대 3,5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 단체가 개최 또는 참여한 공연 및 행사 등의 실적자료(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공연영상 링크 등) → 공연명, 개최연도, 단체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 ④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오페라 [단체]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단체 지원신청 세부분야 '오페라' 분리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공연(오페라)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진행하는 공연(오페라)

2. 지원신청자격

◆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오페라(갈라콘서트, 콘서트오페라, 전막)

4. 지원규모

◆ 최소 3,000만원 ~ 최대 1억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 단체가 개최한 공연 실적자료(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공연영상 링크 등) → 공연명, 개최연도, 단체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 **※ 전막오페라로 지원신청할 경우, 전막오페라 실적자료 1건 필수 제출** ④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1차 서류심의 → 2차 PT 및 인터뷰심의

※ <우수예술지원> 결과발표 이후, 별도 심의 예정

◆ 심의기준

심의기준	배점	항목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	30	•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은 탁월한가? • 사업의 질적 수준이 뛰어난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30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홍보계획은 적정한가?
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0	• 재원조달 방법과 지원신청금액이 타당하고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 예산편성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되었는가?
지역문화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0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 시민문화 향유증진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신청 주체의 전문성	10	• 전문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인가? • 신청 주체가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실적 및 경력은 우수한가?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용 [개인]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공연, 행사 등 작품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진행하는 공연, 행사 등

2.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소재(거주) 부산예술인
※ 2021. 11. 14. 이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부산에 지속 거주해야 함(주민등록 기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기타

4. 지원규모

◆ 정액 4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5건** - 개인이 개최 또는 참여한 공연 및 행사 등의 실적자료(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공연영상 링크 등) ➔ 공연명, 개최연도, 개인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용 [단체]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공연, 행사 등 작품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진행하는 공연, 행사 등

2. 지원신청자격

◆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기타

4. 지원규모

◆ 최대 3,5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 단체가 개최 또는 참여한 공연 및 행사 등의 실적자료(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공연영상 링크 등) ➔ 공연명, 개최연도, 단체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 ④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극·뮤지컬 [단체]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연극·뮤지컬 - 개인분야 미지원
※ 희곡/시나리오 - 문학분야, 평론 - 예술비평분야 지원신청가능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공연, 행사 등 작품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진행하는 공연, 행사 등

2. 지원신청자격

◆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연극, 뮤지컬, 기타

4. 지원규모

◆ 최대 3,5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 단체가 개최 또는 참여한 공연 및 행사 등의 실적자료(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공연영상 링크 등) → 공연명, 개최연도, 단체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 ④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통·국악 [개인]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공연, 행사 등 작품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진행하는 공연, 행사 등

2.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소재(거주) 부산예술인
※ 2021. 11. 14. 이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부산에 지속 거주해야 함(주민등록 기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기악, 성악, 연희, 작곡, 기타
- 기악, 성악, 연희, 작곡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로 선택

4. 지원규모

◆ 정액 4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5건** - 개인이 개최 또는 참여한 공연 및 행사 등의 실적자료(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공연영상 링크 등) → 공연명, 개최연도, 개인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통·국악 [단체]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공연, 행사 등 작품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부산에서 진행하는 공연, 행사 등

2. 지원신청자격

◆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기악, 성악, 연희, 작곡, 기타
- 기악, 성악, 연희, 작곡에 해당하지 않는 기획성 행사일 경우, 기타로 선택

4. 지원규모

◆ 최소 500만원 ~ 최대 3,5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 단체가 개최 또는 참여한 공연 및 행사 등의 실적자료(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공연영상 링크 등) → 공연명, 개최연도, 단체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 ④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우수예술지원> 예술비평 분야

예술비평 [개인, 단체]

예술비평 [개인]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지원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평론·비평지 발간, 평론·비평 관련 행사 등 지원	→	개인의 평론·비평지 발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개인의 평론·비평지 발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학술 관련 지원 불가

2.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소재(거주) 부산예술인
※ 2021. 11. 14. 이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부산에 지속 거주해야 함(주민등록 기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평론, 비평

4. 지원규모

◆ 정액 4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 개인이 발간한 평론·비평지 및 평론·비평지 등에 본인의 원고가 실린 실적자료 1건 당 각 겉표지, 목차, 발행일 표시페이지 (판권) 제출 필수 → 스캔 후 제출서식(한글파일)에 맞추어 이미지 삽입(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④ **2023년도 발간예정 미발간 원고** - 한글파일(hwp) 1편, 30페이지 이내 제출(글자크기 12pt, 휴먼명조체, 줄간격 160%) ※ 미발간 원고 : 개인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지 않은 원고(문예지, 온라인 등의 발표는 인정)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발간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또는 ISSN) 등록 필수
◆ 선정된 작품은 지역출판문화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지역소재 출판사 및 인쇄소에서 발행 권장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술비평 [단체]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

◆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년이 보장된 개인 및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 운영 후, 2024년부터 시행)

1. 지원내용

◆ 예술단체의 평론·비평지 발간 및 평론·비평 관련 행사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행사의 경우, 공연/전시 등의 부대행사가 없는 경우만 신청 가능
※ 학술 관련 지원 불가

2. 지원신청자격

◆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 2021~2022년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휴·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11~12 참고

3. 지원신청 세부분야

◆ 평론, 비평

4. 지원규모

◆ 최대 2,000만원

5. 제출자료 미제출 시 심의배제

지원 신청서

①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 **최근 5년간(2018~2022년) 활동실적자료 총 3건**

구분	활동실적자료제출
평론·비평지 발간	평론·비평지 등 발간 실적자료 1건 당 각 겉표지, 목차, 발행일 표시페이지(판권) 제출 필수 → 스캔 후 제출서식(한글파일)에 맞추어 이미지 삽입(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평론·비평 관련 행사 등	단체가 개최한 평론·비평 관련 행사 등 실적자료(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 행사사진, 웹용 이미지 등) → 행사명, 개최연도, 지원신청단체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 자료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심의기준 : p.13 참고

7. 유의사항

◆ 발간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또는 ISSN) 등록 필수
◆ 선정된 작품은 지역출판문화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지역소재 출판사 및 인쇄소에서 발행 권장
◆ **<지원자책임신청제>** :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단,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출 시 선정취소)
→ 선정 후 교부 시 추가 제출서류 :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고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우수예술지원>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예시

◆ 총 지출예산 중 지원금 사용분은 사용가능 항목 내 편성

세목	항목
일반수용비	◆ 발간비 : 작품집 등
	◆ 사례비 - 스텝, 단기 보조아르바이트, 작업 보조자 등 - 출연료, 자문 - 단체 대표자 사례비 : 사업(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가능
	◆ 홍보 및 마케팅 :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 제작비 : 무대 및 세트, 전시장 조성 등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 원천세
임차료	◆ 공간 대관료 : 공연장, 전시장, 부대시설 사용 등 ◆ 임차료 : 장비, 물품, 소품 대여비 등
재료비	◆ 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미술, 사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 사회보험료(예술인 고용보험 등)
기타운영비	◆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비용 : 운송비 등 ◆ 회계검사수수료 등

지원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 불가 경비	항목
단체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대비용	◆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행사 개최 전 답사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기타사항	◆ '지원 신청자(본인 및 단체 대표자) = 거래하는 업체 대표자' 가 동일인물의 경우 거래 불가 ◆ 업무추진비, 기념품구입비,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 향후 선정된 단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일 경우, 지원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반납 또는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 <예술가치확산> 공공예술
- <예술가치확산> 다원예술
- <주제특화예술> 국제예술교류
- <주제특화예술> 레지던시활성화
- <주제특화예술> 올해의 포커스온 (예정)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V

별도공모 사전안내

<예술가치확산> 공공예술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 세부사항 별도공모 시 참고

1. 공모일정

지원신청(ncas)	→	심의	→	선정결과발표
2023년 2월 중		2023년 3월 중		2023년 3월 말

2. 지원목적

◆ 부산의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공공의 목적 달성 및 사회적 효과 제고

3. 지원내용

◆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공공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 예술기획 지원
◆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 및 공공예술 관련 연구활동 지원

4. 지원신청자격

◆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단체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1개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신청)

◆ 2회 이상 국내외 공공예술 관련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단체
◆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책임기획자가 필수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
※ 책임기획자 변경 불가, 변경 시 선정취소
◆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신청 한 단체

5. 지원신청 기준

◆ <예술가치확산지원> 지원영역 내 '공공예술', '다원예술' 중복신청 불가
◆ <우수예술지원>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다른사업(작품)으로 지원신청 가능함
※ 단, <우수예술지원>과 <예술가치확산(공공예술)> 모두 선정 시 1개 사업을 선택하여야 함(이중지원 불가)

6. 지원규모

◆ 사업예산 내 지원

7. 제출자료

❶ 지원신청서
❷ 사업기획안
- 30페이지 이내 제출

8. 심의안내

◆ 심의방식

1차 서류심의	→	2차 PT 및 인터뷰심의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1차 서류심의 후 별도 공지 예정
※ 필요 시 서류심의와 PT 및 인터뷰 심의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장소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기준	배점	항목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30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신청자 및 기획자의 역량과 인력구성이 적합한가?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공공성 및 예술성	40	• 사업주제는 공공성, 시의성을 갖고 있는가? • 사업추진이 필요한 주제인가? •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은 탁월한가? • 사업의 질적 수준이 뛰어난가?
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10	• 재원조달 방법과 지원신청금액이 타당하고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 예산계획은 사업의 규모 대비 타당하고 적절한가?
지역문화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공공예술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신청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달성이 가능한가? • 사업대상의 공공성 및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인가?

<예술가치확산> 다원예술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 세부사항 별도공모 시 참고

1. 공모일정

지원신청	→	심의	→	결과발표
2023년 2월 중		2023년 3월 중		2023년 3월 말

2. 지원목적

◆ 예술 영역과 가치 확장 및 다원예술 활성화
◆ 예술과 기술융합/협업 등 탈 장르의 실험적인 창작활동 지원

3. 지원내용

◆ 기초예술-기술융합 창작 및 활동 지원
◆ 탈 장르의 새로운 내용 및 형식, 매체를 활용한 융·복합, 복합장르 등 실험적 예술활동 지원
※ 단순 병렬형 장르 결합 및 협업, 기초예술분야 지원 지양

4. 지원신청자격

◆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단체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활동기간 및 활동 실적/경력 제한 없음
◆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신청 한 단체

5. 지원신청 기준

◆ <예술가치확산지원> 지원영역 내 '공공예술', '다원예술' 중복신청 불가
◆ <우수예술지원>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다른사업(작품)으로 지원신청 가능함
※ 단, <우수예술지원>과 <예술가치확산(다원예술)> 모두 선정 시 1개 사업을 선택하여야 함(이중지원 불가)

6.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

7. 제출자료

❶ 지원신청서
❷ 사업기획안(프레젠테이션 자료 20페이지 이내 제출)
※ 제출 후 수정 불가, 제출된 자료로 2차 심의 진행

8. 심의안내

◆ 심의방식

1차 서류심의	→	2차 PT 및 인터뷰심의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1차 서류심의 후 별도 공지 예정

◆ 심의기준

심의기준	배점	항목
다원예술의 적합성	20	• 탈장르, 복합장르, 비주류 및 실험적 예술활동인가? • 기초예술장르에 속하지 않는 예술장르인가?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다원예술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
사업의 우수성 및 예술성	30	•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은 탁월한가? • 사업의 질적 수준이 뛰어난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20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10	• 재원조달 방법과 지원신청금액이 타당하고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 예산계획은 사업의 규모 대비 타당하고 적절한가?
지역문화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지역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 할 것인가?

<주제특화예술> 국제예술교류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 세부사항 별도공모 시 참고

1. 공모일정

지원신청	→	심의	→	결과발표
2023년 2월 중		2023년 3월 중		2023년 3월 말

2. 지원목적

◆ 민간 예술단체의 국제예술교류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 및 창작역량 강화 등 국제화 도모

3. 지원내용

◆ 국제예술교류 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4. 지원신청자격

◆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예술단체
- 등록 소재지가 부산이며, 2021~2023년도 설립단체 지원신청 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최근 5년간(2018~2022년) 2회 이상 국제예술교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5. 지원규모

◆ 프로그램 내용 및 규모, 성격에 따라 사업예산 내 지원

6.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또는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 지원
- 해외 예술가(단체)·기관 등과 공동(협업) 제작 및 창작 발표하는 사업
- 부산 ·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에 초청 또는 참가하는 사업

국내	문화예술 상호교류활동 ※ 해외예술가(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사업(국내거주 해외 국적자 제외)
국외	해외 예술가(단체)·기관 등과 공동 협업 및 국제예술교류사업에 초청받아 진출, 참가

7. 지원제외사업(지원방침)

◆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공통사항 「신청제한」 및 「심의배제」 등 참조

◆ 그 외 지원제외 사업
- 친목 성격의 단순방문 및 초청행사 지원 불가
- 해외 교민 대상 위문 공연
- 아마추어 단체 및 동호회 사업
-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레지던시활성화'와 동일사업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8. 제출자료

❶ **지원신청서**

❷ **사업기획안**(프레젠테이션 자료)
- 필수기재사항
  - 사업개요, 사업내용, 장소(주소, 규모 등 기재) 등
  - 해외 파트너의 초청 조건, 초청기관 소개, 사업장소 소개(현장사진 포함), 영상자료 등

❸ **증빙서류**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초청 문서(필수)'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대관계약서 등 번역문과 함께 제출)
  ※ 코로나-19 확산 및 해외 협력기관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안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제시하여야 함

9. 심의안내

◆ **심의방식**

1차 서류심의	→	2차 PT 및 인터뷰심의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별도 공지 예정

◆ **심의기준**

심의기준	배점	항목
신청 주체의 전문성 및 역량	30	• 신청 예술단체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인가? • 신청 단체가 전문적인 예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신청사업의 해외 파트너는 해당 교류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	40	•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은 탁월한가? • 사업의 직절 수준이 뛰어난가? • 국제예술교류 사업으로서 차별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30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대안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예산계획은 사업의 규모 대비 타당하고 적절한가? • 국제예술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가? •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10. 유의사항

◆ 해외 교류 기관 변경 시 지원금 취소(확정된 기관과 사업신청 가능)
※ 해외체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신청 불가 및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예정 국가 주한공관 또는 해당지역 주재 대한민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바람

<주제특화예술> 레지던시활성화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 세부사항 별도공모 시 참고

1. 공모일정

지원신청	→	심의	→	결과발표
2023년 3월 중		2023년 4월 중		2023년 4월 말

2. 지원목적

◆ 지역 창작공간 여건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예술진흥
◆ 소규모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한 부산발(發) 예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3. 지원내용

◆ 부산 소재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 장르에 상관없이 레지던시 운영목적이 뚜렷하고 프로그램 특성이 분명한 사업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제공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4.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0~2022년) 3회 이상 부산 활동 실적이 있는 부산 소재 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단체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021~2023년도 설립단체 지원신청 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레지던시 공간(창작+커뮤니티)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숙박공간이 없어도 지원가능(임대하여 진행 가능)

◆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 신청한 단체

5. 지원규모

◆ 500만원 ~ 4,000만원

6. 지원항목

◆ 예술인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젝트 지원

7. 지원사업 이행사항

◆ (필수) 입주 예술가 작품 제작 및 작품 발표
◆ (필수) 입주 예술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권장) 지역 내·외 타 기관·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

8. 제출자료

❶ 지원신청서
❷ 심의용 PT자료

9. 심의안내

◆ 심의방식

1차 서류심의	→	2차 현장실사 및 PT심의

◆ 심의기준

심의기준	배점	항목
전문성 및 운영역량	30	• 전문성 - 신청 단체와 기획자의 경력 및 전문성 평가 • 신청 단체의 조직 운영 역량 - 레지던스(공간) 시설의 상태 및 운영 계획 - 보유 인력 및 구성 인력 현황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 목표와 수준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 사업규모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타당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30	• 프로그램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충실성, 참신성, 독창성, 차별성, 예술적 완성도
커뮤니티 활동 및 사회공헌도	10	• 커뮤니티 활동 - 지역 내·외, 타 기관·단체 / 지역민과의 커뮤니티 여부 • 해당분야의 사회공헌도 - 해당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주제특화예술> 올해의 포커스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 세부사항 별도공모 시 참고

1. 공모일정

◆ 향후 공고 예정(상반기 중)

2. 지원목적

◆ 다년도 지원(2년)으로 창작 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기반 마련 및 집중 창작 기회 제공

3. 지원내용

◆ 부산지역 공연예술 작품 다년도 집중 창작 지원(최대 2년)
- 1차년도 : 창작 준비(리서치, 대본 창작 등) 및 쇼케이스 사업비
  ※ 1차년도 쇼케이스 심의를 통해 2차년도 작품 선정 지원
- 2차년도 : 신작 창작 공연 사업비

4. 지원신청자격

◆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예술단체
- 등록 소재지가 부산이며, 2021~2023년도 설립단체 지원신청 불가
- 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최근 5년간(2018~2022년) 3회 이상 공연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5. 지원규모

- 1차년도 : 정액 2,000만원
- 2차년도 : 최대 8,000만원

6. 심의안내

◆ 심의방식

1차 서류심의	→	2차 PT 및 인터뷰심의

공연장연계예술단체육성지원

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세부사항 별도공모 시 참고

1. 공모일정

공고	→	지원신청	→	심의	→	결과발표
2022년 11월 중		2023년 1월 중		2023년 1월 말 ~ 2월 초		2023년 2월 말

2. 지원목적

◆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으로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장 가동률을 증대하여 공연장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며 공동성장 함

3. 지원내용

◆ 공연장-예술단체 협약을 통한 집중육성지원

◆ 비평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한 환류 및 역량강화

◆ 국내·외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공연예술시장 진출 지원 등

4. 지원신청자격

◆ 예술단체 자격 (공연예술 전 분야)
- 최근 5년간(2018~2022년) 3회 이상 부산에서의 공연실적이 있는 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단체

◆ 공연장 자격
- 공고일 전 부산을 소재지로 두고있는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을 마치고, 공연장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연장 (미등록 공연장일 경우, 향후 공연장 등록에 대한 계획 및 의견 제출)

5. 지원규모

◆ 5천만원 ~ 1억원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전자아카이브

e-archive.bscf.or.kr

※ 아카이브(archive) : 특정 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아둔 정보창고

(재)부산문화재단은 부산문화예술 정보축적과 일반시민의 원활한 문화예술 자료이용을 위한 **「부산문화예술 전자아카이브」** 사이트 무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재단은 「부산문화예술 전자아카이브」를 통해 지속적인 사이트 개발 및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되어 온 문화,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비평 등 전 장르의 문화예술작품을 디지털화 시켜 필요한 이들에게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부산의 문화예술자원으로 영구히 보존하여 후세대에 전달할 것입니다.
부산문화예술의 주역이신 예술인과 부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 및 동의 안내

2023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결과물과 정보는 별도의 동의 과정 없이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에 등재됨을 알려드립니다.